

# 글로벌 IT산업 발전 및 규제 중 독점 금지법 및 지적 소유권

- 중한 시장 규제법 연구 센터(MRLC) 국제 심포지엄 총론

개요: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이 산업의 지적 소유권 집합과 경쟁 행위의 독특한 개성은 독점 금지법과 지적 소유권법의 관련된 문제 연구의 중요성을 갈수록 부각되게 한다. 중한 시장 규제법 연구 센터(MRLC)가 주최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 학자, 관원 및 기업가분들은 지적소유권법과 독점금지법의 관계, 표준 필요 특허(SEP)의 법적 규제, 특히 주장 실체(PAE)의 법적 규제, 공평한 무차별(FRAND)원칙 등 많은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핵심 단어: 독점 금지법, 지적 소유권, 규제

## 1. MRLC 국제 심포지엄 요약

최근 IT산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모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고, 전통적인 운영체제와 독점가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혁신가에게 따라 잡히고 있다. 현재 인류가 겪어온 각종 산업 중 아마 변동이 가장 빠르고, 개별 기업의 생명 주기가 가장 짧은 산업으로써, IT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경쟁행위의 개성은 지적 소유권과 독점 규제법의 작용에 대한 토론과 사고가 더욱 더 필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중한 시장 규제법 연구 센터(MRLC)는 2014년 5월 24일 북경에서 “글로벌 IT산업 재구성 발전 방향 및 한중 규제 대응- 독점 규제와 지적 소유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 한, 미, 유럽 등 국가들과 지역들이 글로벌화의 배경 아래 IT산업 재구성과 발전 법률 규제의 문제에 대해 각국을 위해, 특히 중국의 독점 규제 집행과 사법을 위해 참고 가치가 많은 정책 의견을 제공했다.

중국, 한국, 미국, 유럽 연맹, 일본의 과학 연구, 산업, 정부 부문을 대표하는 약 150여 명의 사람의 이번 MRLC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이 회의는 MRLC 중국 측 주임 위원인 史际春 교수님과 한국 측 주임 위원이신 김연태 교수님의 개막 인사를 시작으로 중국 경험, 한국 경험, 국제 경험과 원탁회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다. 마지막으로 MRLC 중국 집행 주임이신 孟雁北 부교수님이 이번 회의에 대한 총정리 및 폐막사를 전달했다. 중국 사회 과학 법학소 王晓晔 교수의 주관 아래 중국 공상 행정 관리 경쟁 집행국의 刘烨副국장은 “공상 기관 독점 규제 집행법 최근 진전 및 지적 소유권 영역의 독점 규제법 시작 단계의 탐색”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고, 잇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업과 정보화부와 학계 대표는 중국의 지적 소유권, IT산업 및 규제법의 입법과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했다. 한국 영역으로는 중국인민대학 경제 대학의 吴汉洪(오한홍) 교수의 주관 아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Ji, Chul Ho 상임 의원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남용 지적 소유권 안건의 경향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하였고, 학계의 대표는 한국 지

적 소유권 영역의 독점 규제 입법 및 사법 판정 현황에 대해 상세히 논술했다. 국제 영역에서는 한국 고려대학교 李煌(이황)교수의 주관 아래, 미국 연방 무역 위원회, 미국 규제 법 협회, 유럽 연맹 경쟁 위원회 및 미국, 일본 학계 대표들은 표준 제정과 실행 중 특허권 행사와 관련된 제한 경쟁 문제에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원탁회의는 중국 정법 대학의 时建中 교수의 주관 아래, 중국 공상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국의 楊洁 처장, 공업과 정보화부 정책 법규 李長喜 처장,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Park, Jae Hyun 과장, FTC 국제 사무실 Koren Wong-Ervin여사, 유럽 연맹 경쟁 위원회 Gunnar Wolf 선생, 미국 독점 규제 협회 주석 Albert Foer 선생, 플로리다 대학 법과대학 D. Daniel Sokol 교수는 FRAND원칙 (공평, 합리, 무차별 원칙)과 독점 규제법 집행에 대해 교대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은 대체로 국제화 및 기술 혁신이 각국의 독점규제에 공통적으로 도전과 화제를 가져왔고 각국의 입법과 감독 부문은 스스로 가치 체계와 사법 진행과 동시에 상호간의 소통과 협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회의는 하나의 훌륭한 국제학술 교류 플랫폼이었고, 회의 참가자로 하여금 전 세계의 IT산업 독점 금지 및 지식 재산권 정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차이점을 더욱더 이해하도록 했다.

## 2. 각국의 지식재산권 영역, 독점 금지 입법 및 집행에 대한 탐색과 경험

### 1) 중국이 지식재산권 영역, 독점 금지 입법 및 집행에 대한 탐색

중국<독점 금지법>이 2008년 실행된 이래 최근 6년, 18번째 삼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제회의)에서는 시장이 자원 배분과정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질서 정연한 시장 체계를 건립해야 한다고 했다. 지식 재산권 영역과 독점 금지법 사례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독점 금지 입법과 이론 연구가 끊임없이 깊어지고 발전한다 할지라도 지식 재산권 영역의 독점 금지 입법 및 집행은 여전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첫째, <독점 금지법>은 지식 재산권 영역의 실행에 있어서 특수한 관점과 요구가 있다. 지식 재산권은 무형 재산이고 고유의 점유 형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식 재산권 및 독점 상태는 법률의 의제이다. 따라서 법률의 그에 대한 보호는 난관에 봉착 할 수 있고 권리인의 지식 재산권 남용 또한 상대적으로 쉽다.

둘째, 지식 재산권과 독점규제는 공통의 경쟁촉진, 혁신조장 및 소비자복지 보호라는 최종의 목표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 사이에는 상호간의 보충, 촉진이 있을 수 있지만 조화에는 충돌도 있을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지식 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 법률은 주로 독점 금지법, 지적 재산권, 계약법 등의 법률에만 집중이 되어있다.

셋째, 중국은 <독점 금지법>의 지침과 규정을 제정하는 방면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공상총국(상공 행정 관리국)은 <상공 행정 관리 기관의 지식 재산권 남용 배출의 금지, 경쟁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했다. 위 규정은 주로 다섯 방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규정의 목적을 확정하고 지식 재산권 및 관련 시장의 범위를 확정했다. 둘째로, 경영자들이 지식 재산권 과정 중 독점 협의함을 금지하고 안전 세이프 포트(safe port) 규칙을 설립했다. 셋째로, 경영자들이 지식 재산권 행위 과정 중 시

장 분배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시에 지식 재산권 관련 허가 거부, 교역과 끼워 팔기 제한 및 부가적인 불합리한 제한 조건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정황을 나누어 규정했다. 넷째로, 약간의 특정 유형의 지식 재산권 실행 행위가 독점 행위를 형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을 했다. 마지막으로, 지식 재산권 실행 행위 분석이 남용을 형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지식 재산권 행위가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확정 요소, 공상기관이 처벌을 하는 근거, 원칙 및 구체적 벌칙 등에 대해 규정했다.

넷째, 중국 학계와 독점 금지 집행 기구가 지식 재산권 침해 배제 남용과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지식 재산권의 실행 과정 중의 긍정적인 작용에 대한 충분한 확신과 권리자의 지식 재산권의 정당한 실행에 대한 충분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독점 금지법 집행 중 지식 재산권과 기타 재산권은 차별 없이 대해야 하고, 경영자가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 해서 관련 시장에서 시장분배지위를 갖는 것은 안 된다. 셋째, 권리의 행사에는 모두 경계가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남용 경쟁 제한의 행위는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독점 금지 규제법이 주어져야 한다.

## 2) 한국의 지식재산권 영역의 독점금지법 입법과 실행

한국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규제는 주로 특허법, 민법 및 독점금지법과 공정거래법등에 집중되어 있다. 특허법 규제와 관련해 한국 최고 법원은 특허법을 이용해 지식재산권 남용을 판결한 사례가 있다. 주로 지적재산권이 효과가 없는 명확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로 허가를 거절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포괄했다. 지금 볼 때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에 대한 특허법 규제 범위는 제한이 있고 IT 업종 중 지식 재산권을 남용하는 상황을 포괄 할 수 없다. 민법 규제와 관련해 한국 민법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을 사용해 지적재산권 남용 형태를 막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원칙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민법이 지식 재산권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편화 되어있지 않다. 독점금지와 공평무역법 규제에 관련해 이 법안들은 특허 매복과 지불 연기 등 문제에 규정을 만들었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지식재산권남용 행위에 대해 이 법안들은 적용한다. 이밖에 한국은 2000년 반포를 하고 2010년에 ‘정당하지 않게 지적재산권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수정했고 동시에 시장 지위 남용에 대한 지침, 인수합병 검열 지침 중 지식재산권 남용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을 했다.

법률과 지침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남용 안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 2005년의 Rainbowscape 안건 중, Rainbowscape 회사는 강제로 교역 서명을 함과 특허에 필요한 허가를 바꿨다. KFTC는 이 회사는 협상 우세 지위를 사용해 강제로 교역상대로 하여금 필요 특허와 무관한 계약을 하게 하였고, 이는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결했다. 2006년 황가소식과학기술회사 안건 중, 경쟁 입찰을 받지 않은 탐지기 생산업체는 이미 경쟁 입찰을 받은 생산업체 상품이나 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거절해, 이미 허가를 받은 생산업체로 하여금 생산을 할 수 없게 했고 KFTC는 이러한 허가 거절은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확정했다. 2009년 퀄컴 안건 중, 퀄컴은 CDMA 표준 필요 특허의 소유자로 활동하며 관련기술 시장에서 차별적인 특허 사용 요금률을 채택했다. 2011년의 글라소스미스클라인 안건 중,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은 모방 제약 회사에 대해 반대 지불의 방법으로 경쟁 상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고 소비

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며 KTFC는 이 지식재산권 남용은 260억 달러의 벌금이라고 판정했다. 애플과 삼성의 오랜 기간 특허 분쟁 안건 중, KFTC는 2014년 애플이 삼성은 소송 과정중 표준필요 특허에 대해 불공평한 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 3) 미국의 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독점금지 입법 및 실행 경험

미국 법원은 지식재산권은 제한에 대해 “9가지의 금지”에서 “합리적인 분석”으로 원칙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미국 사법원과 연방 무역 위원회는 1995년 발표한 “지식재산권 허가의 트러스트 반대 지침”에서 지식재산권 허가 행위는 보통 경쟁에 유리하며 트러스트 반대법은 지식 재산권에 합리적인 원칙으로 분석을 하여 지식재산권 제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물질적 재산과 무체 재산은 동일시해야 하나 지식재산권을 강조하는 것은 권리자의 남용을 쉽게 한다고 했다. 지식재산권 허가는 기업이 생산요소와 상호적으로 결합하고 일반적으로 경쟁에 유리하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경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할 때 우선 만약 이러한 하자가 없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지식재산권 허가 제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용한 방법은 합리적으로 원칙을 분석하고, 지식재산권은 정상적인 경쟁에 영향을 미쳐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정가의 감시 문제에 대해 미국 독점금지 집법 기관은 보통 가격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집법자는 어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가격을 매기기 힘들며, 이것이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지와 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은지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차별상 허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미국 독점금지 집법에서는 실제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리자는 교역의 자유가 있고 교역 대상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시장 경쟁을 무너뜨린다. 꼭 원칙을 실용해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오히려 꼭 실행해야하는 원칙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칙은 권리자의 핵심 권리의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MRLC 국제 세미나 학술 관점 총론

### 1)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금지법의 관계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금지법은 현대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며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두가지 모두 일치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범위 안에서는 충돌을 가지고 있다. 일치성에 대해서는, 두 대상 모두 경쟁을 촉진시키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소비자의 복리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 촉진을 통해 새로움을 격려할 수도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새로움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 시킬 수 있다. 권리자가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때 어떠한 행위는 지식재산권과 독점금지법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근거하여 실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독점금지 이익의 평행을 이뤄내야 한다. 어떠한 것이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모두 명쾌한 답안이 없

다. 어떠한 전문가는 학리적으로 분석을 한다. 법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식재산권 남용은 권리 남용의 범위에 들어가며 지식재산권 남용은 지식재산권의 정당 행위와 비교하자면, 권리부득남용원칙이라는 결과에 도달한다. 비교법에 의하자면, 세계 각국의 지식재산권 남용은 일치되는 정의 혹은 해설이 없고 어떠한 국가는 판례법을 통해 지식재산권 남용의 개념을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중국의 ‘독점 금지법’에 대해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지식재산권 남용은 무조건 ‘독점금지법’을 위반 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 횟수가 많아져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2) 표준필요특허(SEP)의 법률 규칙

표준필요특허는 어떠한 기술에서 되돌릴 수 없는 특허이다. 표준필요특허 실행은 두가지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첫째는 협의중 FRAND 원칙에 근거해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 표준필요 특허의 소유자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둘째는 표준화필요는 시장 경쟁을 촉진 시켜야 하며 표준필요특허의 소유자는 표준필요특허의 금지를 할 수 없다. 국제 표준화 조직은 표준 제정 순서에서 최대한 빨리 필요특허를 인정하는 것을 독려하고 이것이 표준 제정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에서 숨어있는 특허권 남용 문제를 피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표준적인 제정은 항업내의 부정확성을 줄이고, 새로움을 촉진시키지만, 표준화의 동시에 독점의 위험을 동시에 가져온다. 우선, 하나의 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경쟁자들이 함께 모임을 의미하고,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권리가 있지만, 다른 시장 참가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 또한, 표준필요특허는 대리인이 없고, 이것은 기술시장에서 표준필요특허의 소유자는 교역 우세의 지위를 가짐을 의미하고, 이러한 우세지위는 다른 기업이 효과적으로 이러한 표준 기술을 가지는 것을 막음을 의미한다.

유럽 전문가는 유럽 경쟁 위원회의 모토로라 안건에서 유럽이 표준필요특허 문제에서 사용한 방법에 대해 분석하기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지를 하는 것은 일종의 합법적인 보완조치이라고 했다. 하지만 만약 특허 소유자가 표준필요특허의 기초에 대해 금지시킨다면 이것은 바로 지식재산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경쟁위원회는 표준필요특허의 소유자와 실행자 사이에 평행을 이루기를 바라며, 특허소유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 획득 보상에 근거하여, 이러한 표준이 실행자에게도 상당한 표준화 기술을 가져다주어야 하고, 지식재산권 남용으로 인해 손해를 봄을 안 된다고 했다.

## 3) 특허 주장 실체(PAE)의 법률 규칙

특허 주장 실체는 특허를 개발하지 않으며 또한 특허에 대해 상업화를 하지 않고, 직접 과학기술 회사에서 특허를 얻고 허가와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PAE의 책략은 보통 아래를 포괄한다. 구체적으로 권리 침해 근거를 얻기 전에는 먼저 여러 회사에 대해 동시적으로 소송 위협을 제기하고, 일부 회사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나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또한 특허 권리의 범위는 아주 모호하고 이러한 특허를 주장하는 권리도 모호해, 이를 통해 특허 소송 기회를 갖는다.

미국연방무역위원회(FTC)와 사법부(DOJ)는 특허주장실체가 되지 않은 사람을 특허 유민이라 부르고, 그들은 특허주장실체 자신은 문제가 없고 특허의 최후 실용과정에서 산업에 고리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나 특허주장실체의 일부 행위가 특히 허구로 소송하는 행위는

특허 제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산업사를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했다. 기술 발전의 원인으로 일반적인 사용자는 자신이 어떠한 침해 받기 쉬운 특허를 침해 했는지 모른다. 따라서 특허주장실체는 소형 기업, 개인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들에게 집중을 하여 이러한 조직이나 개인이 소송 비용을 다 내고 특허 사용비를 내게끔 만든다. 이러한 거짓 혹은 불필요한 소송 행위는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였으며 새로움과 경제 발전을 막는다. 이 밖에도 특허주장실체의 거짓 혹은 불필요한 소송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하는 추세를 만들며 일부 회사는 특허를 특허주장실체에게 돌리며 이러한 특허 전이는 경쟁 상대의 원가를 높이며 지식재산권 시장 발전을 막는다.

중국은 이미 특허주장실체가 나타났고, 중국 기업이 세계 경쟁 배경아래 다른 나라들의 특허주장실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공상총국은 특허주장실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법률은 현재 특허주장실체를 규제하는 조문이 없으나, ‘독점금지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다. 만약 한 특허주장실체가 시장 분배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허가 거절, 불합리조건 추가, 부정당이유 등을 통해 독점금지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4) 공평합리무차별(FRAND) 원칙

표준화 조직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대중의 표준화 필요화, 합리적 경쟁 질서 및 특허 소유자 남용사이에 평행을 찾는 것을 요구로 한다. 이로 인해 기술 표준과 관련된 특허권 행사와 필요 제한을 더한 제한이 바로 공평합리무차별 원칙이다.

미국 사법부, 특허와 상표국은 2013년 연합 성명을 발표해 FRAND원칙에 대해 명확히 했다. 첫째로, 가격의 공평성과 관련해 특허 소유자는 우선 가격을 통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 침해자는 만약 특허의 가격이 높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특허비용의 계산은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전체적인 설비를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 셋째는 표준필요특허의 뒷 소유자는 앞 소유자가 한 FRAND원칙을 준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내용은 항업 내의 조직 협상에서 나오며, 항법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 인식을 같아질 때까지 계속 한다. 그러나 어떠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항업내의 자행 협상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 사법부 혹은 연방 무역위원회에 RAND원칙에 대해 지침을 요구했다.

일본 학자는 삼성과 애플의 분쟁에 대해 일본 집법 기관은 어떻게 FRAND원칙을 적용할지를 설명했다. 이 안건에서 일본 법원은 삼성이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주요 원인은 삼성이 FRAND원칙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아래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했다. 첫째, 표준제정의 진행 과정중과 표준제정 2년 후 삼성은 소식을 드러내지 않았다. 둘째, 삼성은 논의과정 중 신뢰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들은 허가 비용의 계산 방법과 기초를 이야기 하지 않고, 관련 허가 조건 노출을 거절했다. 셋째, 삼성은 표준필요특허 금지에 근거하였고 이는 허가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독점금지 집법 기관은 지식재산권 독점금지 규정에서 FRAND원칙을 고려 범위 안에 넣었다. 한 방면에서는 표준 혹은 협상의 과정 중 당사자의 어떠한 행위를 규제하고 이는 독점금지가 규정한 독점 협의 행위라고 했다. 다른 한 방면에서는 표준필요특허 소유자○가 시장 배분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독점금지법 규제는 두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시장배분지위의 경영자가 표준제정 과정 중 그이 특허가 관련

표준에 유입되는 상황에서 일부로 표준 제정 조직에게 권리 소식을 전하지 않거나 명확히 특허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특허는 표준필요특허가 된 후 불합리하게 특허권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다른 하나는 특허가 표준필요특허가 된 후에 배분 지위를 가진 권리자가 부정당한 이유로 FRAND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경영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를 실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허가 과정중 불합리한 제한을 넣는 것을 가리킨다.

FRAND원칙은 표준필요특허 실행 과정중 가장 기뻤거인 원칙으로 일부 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국제상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국제적인 방안은 없으며, ICN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진한다. 그러나 어떠한 전문가가 말하기를, 현재 전세계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해 기본적인 공통된 인식이 없으며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없다고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매우 빨라지며 감독기관은 많은 시간을 들여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해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FRAND 원칙의 구체적인 문제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것이다.

#### 4. MRLC의 다음 작업 전망

이번 ‘글로벌 IT산업 발전 및 규제 중 독점 금지법 및 지적 소유권’을 주제로 국제 학술 세미나는 중한 시장 및 규제법 연구 센터 (MRLC)의 주최와, 상해교통대학 경쟁법률과 정책 연구센터의 협동 주최로 이루어졌다. 중한시장 및 규제법 연구센터(MRLC)는 중국인민대학 경제법학 연구센터와 한국 고려대학 혁신, 경쟁, 규제법 센터의 협동 설립으로, 학술, 교학 그리고 실무 연구에서의 연합 연구 기관이다. 이는 중한 양국의 법학 연구 영역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중한 양국의 관련 학술 교류에 많은 의의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센터는 핵심 임무는 국제 법률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경험을 비교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며 중점은 중한 양국의 경쟁법, 지식재산권법 및 관련 시장 규제법들을 다루는 것이다. MRLC는 ‘중한지식산권법과 경쟁법 연도 연구 보고’를 작성하고 매년 중국어, 한국어, 영어 세 가지 언어로 출간을 하며 동시에 중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MRLC 강좌를 주최하고, MRLC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사상, 발견, 관점이 있는 인사들이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열 것이다.